

—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유사기능 통·폐합 및 업무증가 분야의 인력을 증원하되,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조정 운영

3. 주요내용

- 정원조정 : 정원의 총수 : 1,382 $\Rightarrow$ 1,400명(증 18명)
- 조정방법
 - 혁신분권, 지역균형발전 등 업무신설 및 증가분야 인력증원
- 직렬·직급별 조정내역

구 분	계	6급	7급	8급	9급
계	18	5	7	4	2
행 정	16	3	7	4	2
건 축	1	1			
간호+의료기술	1	1			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20조
- 행자부 자제12200-247(2003. 5. 9)호의 표준정원시행지침
- 자치행정과-1884('04. 3. 6)호의 2004년도 시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
- 자치행정과-2283('04. 3.20)호의 구미시 기구 및 정원조정승인(협의)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에 의거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유사기능 통·폐합 및 업무증가분야의 인력 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임.
- 시민복지회관의 감축된 행정5급 1명은 체육관리사무소장으로 상계 조정하고, 6급이하 18명을 증원하여 직렬별·직급별로 조정함으로써 총 정원을 1,382명에서 1,400명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